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49
----------	----

제출일자 : '99.10.5.
제출자 : 사천시장

1. 제안이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나. 국내외투자가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
흥기금의 출연 및 조성된 기금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범위를 정하고,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5조)
- 라.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입지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내지 제17조)
- 마. 국내기업의 관내 창업 또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함
(안 제19조 내지 제20조)

바. 국내외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도비 등이 수반되는 보조금의
시비 분담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3. 법적근거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1998. 9. 16 법률 제5559호)
- 나.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1999. 1. 14 조례 제2640호)
- 다. 같은조례시행규칙(1999. 7. 22 규칙 제2483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999. 9. 15 ~ 1999. 10. 4(20일간)
-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게재
- 다. 접수된 의견 :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 2 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⑤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8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사천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감면율은 사천시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입지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용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3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16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8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인이상인 경우
2.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인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인이상인 경우

- 제17조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①시장은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차액보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 ③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 5 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시장은 도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19조 (국내기업의 지원) ①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30인이상이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 가의 2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 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이전보조금) ①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 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측

제21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시장은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